주택임대차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안내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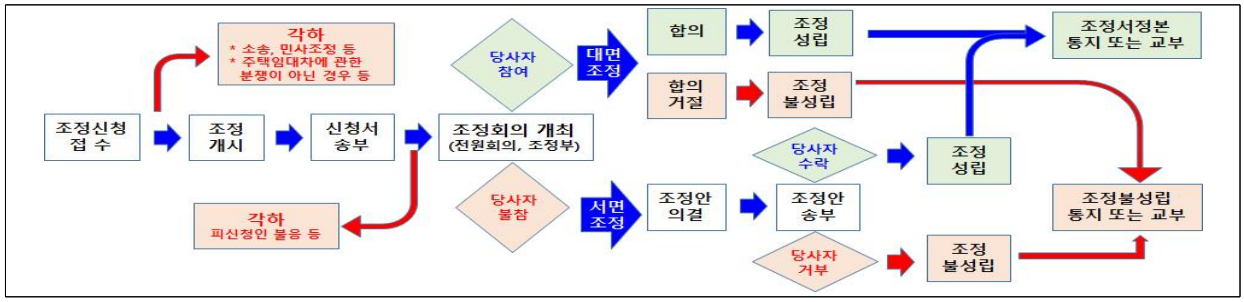

Ⅰ. 조정신청의 각하 (법 제21조제3항)

○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.

1.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
2.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「민사조정법」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
3.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
4.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
5. **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**
6. **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**

Ⅱ. 조정절차의 개시 (법 제22조 제1항, 제2항)

○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.

Ⅲ. 조사 등 (법 제24조)

○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, 피신청인,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Ⅳ. 처리기간 (법 제23조)

○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(1회 30일 연장가능).

Ⅴ. 조정의 성립 및 효력 (법 제26조, 제27조)

○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,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.

Ⅵ. 조정비용 부담 (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)

○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**수수료를 납부**하여야 합니다.

조정목적의 값	수수료	조정목적의 값	수수료	조정목적의 값	수수료
1억원 미만	10,000원	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30,000원	10억원 이상	100,000원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20,000원	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50,000원		
※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합니다.					

※ 수수료 면제 : 소액임차인, 기초생활수급자,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환자 등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상자 등,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와 장애인, 민간임대사업자 등

※ 수수료 환불 : 조정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, 납부한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Ⅶ. 기타

○ 조정사건과 관련한 (주소)보정, 자료제출 요청, 조정회의 개최 등 각종 통지는 귀하가 제출한 주소, 전자우편, 전화, 문자, SNS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.
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.

날짜	20 년 월 일	피신청인1	서명 또는 날인	피신청인2	서명 또는 날인